

##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·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	
① 부동산 소재지				
② 신고인	구분 [ ] 매도인 [ ] 매수인 [ ] 개업공인중개사 [ ] 대리인			
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(법인소재지)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
③ 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		
④ [ ] 거래지분 비율	분의 ( )	분의 ( )		
[ ] 거래 지분	[ ] 토지 [ ] 건축물	분의	[ ] 토지 [ ] 건축물	분의
[ ] 계약대상 면적	토지: m <sup>2</sup> 건축물: m <sup>2</sup>		토지: m <sup>2</sup> 건축물: m <sup>2</sup>	
[ ] 계약 조건 또는 기한				
[ ] 거래가격	거래가격		거래가격	
	분양가격		분양가격	
	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		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	
	추가 지급액 등		추가 지급액 등	
[ ] 중도금 및 지급일	중도금: 지급일:		중도금: 지급일:	
[ ] 잔금 및 지급일	잔금: 지급일:		잔금: 지급일:	
⑤ [ ] 매수인 변경				
⑥ [ ]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				
⑦ [ ] 위탁관리인 변경		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매도인 : (서명 또는 인)  
매수인 : (서명 또는 인)  
② 신고인 개업공인중개사 : (서명 또는 인)  
(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(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	

### 유의사항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9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작성방법

-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·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.
  - ② 매도인,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,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,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.
  -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[ ]에 √표시를 하고, 변경 전·후의 내용을 적습니다.
  - ④ 거래지분 비율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 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  -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공동매수의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매수인의 거래 지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, 매수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  -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란에는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지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, 계약대상 부동산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  - ⑦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, 변경 전·후 위탁관리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※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### 처리절차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